

# 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5년 5월 26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9,570,000]주(신주 1주당 액면가액 : 1,0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준용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할인율은 30%를 적용함. 단,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5년 6월 30일
6. 신주의 배정방법 :
  - ①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624780931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를 구주주의 배정범위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③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인수단” 및 “모집주선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한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인수단” 및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인수단”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인수단” 및 “모집주선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인수단”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인수단” 및 “모집주선회사”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인수단”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인수단”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iii) “인수단”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는 제2조 4항에 따른 “인수단”의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하며,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배분하여 산정한다.

(iv) 단,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 25,000

주(액면가 1,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7.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 : 2025년 08월 04일~2025년 08월 05일

(2) 일반공모 청약 : 2025년 08월 07일~2025년 08월 08일

8. 주금납입예정일 : 2025년 08월 12일

(납입처 : (주)하나은행 장산역지점)

9.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 양도를 허용함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 2025년 07월 18일 ~ 2025년 07월 24일)

10. 기타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5년 05월 26일

LS마린솔루션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4, 16층

대표이사 김 병 옥

명의개서 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